

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발굴허가번호 제 - 호		매장유산명			
발굴조사 유형 [] 표본 [] 시굴 [] 정밀발굴		발굴 사유			
매장유산 소재지		매장유산 산포지(散布地) 면적 m ²		발굴면적 m ²	
발굴조사 기관명		조사단		조사단장	
발굴기간 . . ~				책임조사원	
현장조사일 일				조 사 원	
				준조사원	
				보 조 원	
발굴 비용 원					
출토유구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고
출토유물	종류	시대	수량	중요 유물	비고
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					

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신고자 성명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발굴 현황(조사개요, 추진경과, 발굴 중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사진, 유구·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합니다)
	2. 출토된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
	3. 출토된 유구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(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로 한정하며, 보존조치 이행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